

1. 제정이유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안 제3조)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안 제4조)

- 1) 진료지원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그 세부목록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 2) 간호사가 기록 및 처방에 관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 후 서명 및 승인하도록 하며 최종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됨을 정함.

다. 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안 제5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간호사가 되려면 임상경력 총 3년 이상의 간호사여야함을 정함.

라.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안 제6조)

- 1) 진료지원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함.
- 2) 교육과정을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함.
- 3) 교육과정의 이수과목, 시간,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 4)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해당 보수교육은 「간호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함.

마. 교육기관 (안 제7조)

- 1)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의 기준을 정함.
- 2)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정함.

바. 수료증의 발급 (안 제8조)

- 1)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에게 교육수료증 및 실습교육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함.
- 2)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 및 실습교육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 3)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간호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을 정함.

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절차 (안 제9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병원별 진료지원간호사의 진료지원업

무 범위를 설정하고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도록 함.

아. 공동서명시스템 (안 제10조)

진료지원간호사에게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자. 현황조사 (안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할수 있음을 정함.

차. 가이드라인 (안 제1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지원업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10. 1. ~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수행요건 및 교육이수에 관한 사항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간호사”란 「간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담간호사”란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②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인증 요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2. 시술 및 처치 지원
3.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목록 및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과 전문간호사 및 전담간호사 여부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간호사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록·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처방에 대하여 의사가 확인하고 서명·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처방 및 이와 관련된 환자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전담간호사 임상경력) 전담간호사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총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

제6조(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및 이해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 교육, 실기 교육, 현장실습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문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시간·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이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라 한다)는 매년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가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및 그 지부·분회
 3.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병원
 5.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교육 훈련센터
 7. 그 밖에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현장실습 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인 교육기관 : 직접 운영
 2.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또는

변경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수료증의 발급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담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를 현장실습 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이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를 현장실습 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료증을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과정 신청인원 및 이수인원, 수료증 및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 발급 대상자 및 발급일자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제4항에 따른 간호사 수료증 관리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절차) ① 의료기관의 장은 기관 내 진료지원 업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소속된 5명 이상의 의료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사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이하 “직무기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의 작성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받아야 한다.

1. 전문간호사의 경우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
2. 전담간호사의 경우 :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로 확인되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전담간호사가 이수한 교육과정 및 실습행위 등을 반영하여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와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동서명시스템) ①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환자의 기록·처방에 참여한 의료인의 성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현황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근무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명단(각 간호사의 성명 및 간호사 면허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문서 사본

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가 전문간호사인 경우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
나.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가 전담간호사인 경우 :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

제12조(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

수를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인증 취득 의사를 신고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의무를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과조치 기간 내에 진행한 인증 절차 결과가 불인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의무가 적용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나, 인증조사 대기, 일정 미배정 등 해당 의료기관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진행의사 신고의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3조(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제5조에 따른 임상경력을 충족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임상경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간호사 및 이 규칙 시행 당시에 제5조에 따른 임상경력을 충족하였으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한 경력이 1년 6개월 미만인 간호사 중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간호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제6조제1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특례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기관 유형	☐ 간호사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 의료기관단체 및 그 지부·분회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 기타 ()	☐ 의사회 및 그 지부·분회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④소재지			
⑤담당자 성명		⑥전화번호	
⑦ 교육과정 운영내용	교육과정명		교육개시 예정일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이 적힌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3.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 현황
------	---

①·②: 신청한 기관명 및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번호를 같이 기재합니다.)

③·④: 신청한 기관의 유형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⑤·⑥: 신청한 기관의 교육과정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운영하려는 교육과정을 기재합니다.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 14 -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①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기관 유형	☐ 간호사 중앙회 및 그 지부·분회	☐ 의사회 및 그 지부·분회	
	☐ 의료기관 단체 및 그 지부·분회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 기타 ()		
④소재지			
⑤담당자 성명	⑥전화번호		
⑦ 교육과정 변경내용	교육과정명	최초승인일	변경내용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이 적힌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3.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 현황
	4. 교육과정 변경 주요내용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①·②: 신청한 기관명 및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번호를 같이 기재합니다.)
③·④: 신청한 기관의 유형 및 소재지(주소)를 적습니다.
⑤·⑥: 신청한 기관의 교육과정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변경하려는 교육과정을 기재합니다.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변경내용은 간략히 기록하고 상세 사항은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 []

- ① 성 명 :
② 생 년 월 일 :
③ 간호사 면허번호 :

위 사람은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 요양기관명	

년 월 일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 교육 확인서				
인적 사항	성 명			간호사 면허번호
	주 소			전문간호사 자격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교육 과정	교육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실습 기관	요양기관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성명	현장 실습기간
실습 행위	1.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2. 시술 및 처치 지원			
	3.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명시된 행위로 작성				
의료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진료지원업무 추가 수행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2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고 사항	신고 행위	총 건 (전문간호사 건 / 전담간호사 건)	
	기타		

「간호법」 제14조 및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추가 수행이 필요한 진료지원업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중 제2쪽)

진료지원업무 행위명				
	※ 약어가 아닌 행위명 전체 기입 필요 (영문/한글 동시 기입)			
수행 진료과				
	※ 해당되는 진료과 전체를 명시			
행위 분류	☐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에 관한 지원 ☐ 시술 및 처치 지원 ☐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 기타 (분류 명시 :)			
수행자 구분	☐ 전문간호사 ☐ 전담간호사			
행위의 주요내용				
	※ 행위 시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			
행위 수준의 평가	업무의 침습성	상 ☐	중 ☐	하 ☐
	업무의 위해도	상 ☐	중 ☐	하 ☐
	필요 전문성	상 ☐	중 ☐	하 ☐
진료지원업무 수행 필요성				
행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교육과목			
	교육시간			
	필요 실습건수			
	기타			
비 고	※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행불가로 명시된 행위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 른 의료기사 업무는 추가 수행 행위로 신고할 수 없음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의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 요양기관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주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진료지원업무 수행 현황	규칙 시행일 기준 진료지원 수행 여부			[] 예 [] 아니오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			[] 예 [] 아니오			
	진료지원간호사 고용 인원			총 명 (전문간호사: 명 / 전담간호사: 명)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의료기관 인증 계획	신청 예정 인증 유형		[] 급성기병원 인증		[] 요양병원 인증		
			[] 재활의료기관 인증		[] 기본인증		
	인증조사 희망시기		년		[] 분기 [] 월		
컨설팅 진행(예정) 여부 (선택사항)		진행시기:		년		월	
		컨설팅종류:		(시행주체: [] 인증원, [] 민간)			

신청인 (의료기관의 장) _____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본 신고는 의료기관 인증 의무에 대한 경고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인증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인증 결과 불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판정이 확정된 날부터 즉시 의료기관 인증 의무가 적용되어, 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

- 19 -